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6.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력범죄자의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범죄예방 데이터담당관(과 단위)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전자감독”으로 변경하고, 교정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6명(9급 6명)을 기술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제7조제4항제4호 중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을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작성”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보호행정 홍보·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 중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전자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각각 “전자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을 “전자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특정범죄자 관리”를 “전자감독 및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으로 한다.

1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

②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범죄예방정책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

제23조제5항제9호 중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전자감독”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

과 같다.

[별표 5의3] <신 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5명(서기관 1명 및 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은 각각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3의 보호사무관 1명 및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으로 본다.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70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675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1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	19
서기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8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25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교정관	20
보호사무관	12
검찰사무관	20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4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교정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7
교감	32
보호주사	10
검찰주사	34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	38
행정주사	2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1
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교감	3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	4
교감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 · 검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9
보호주사보	12
검찰주사보	10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 ·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2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1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보호서기	0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운전서기보	10
방송통신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2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검사 계	25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③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u>	3. <u>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u>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 ----- ----- -----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 ----- 사항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10. <u>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1. ~ 16. (생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설>	20. <u>보호행정 홍보·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에 관한 사항</u>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u>	2. <u>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u>
3. ~ 14.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u>	7. ----- <u>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u>보호관찰소</u>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u>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u> ----- --
10. ~ 18. (생략)	10. ~ 18. (현행과 같음)
19. <u>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u>	19. <u>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u> ----- -----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신설>	21. <u>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신설></u>	14. <u>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 <u>특정범죄자 전자감독</u> ”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 ----- ----- ----- “ <u>전자감독</u> ” -----
2. <u>특정범죄자 전자감독</u>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u>전자감독</u> ----- ----- --
3. 삭제	
4. <u>특정범죄자 전자감독</u>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u>전자감독</u> ----- ----- -----
5. <u>특정범죄자 전자감독</u>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감독	5. <u>전자감독</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u>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u>	8. <u>전자감독</u> ----- ----- --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u>특정범죄자 관리</u> 등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u>전자감독 및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u> ----- -----
<u><신설></u>	<u>제7조의2(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u> ①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u>범죄예방정책국장</u> 밑에 <u>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1명</u> 을 둔다. ② <u>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u> 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u>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u>범죄예방정책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u> 2. <u>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u> 3. <u>첨단기술을 적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u>
<u>제7조의2</u> (생략)	<u>제7조의3</u>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④ (생략)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⑤-----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u>	9. <u>전자감독</u>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생략)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장은 <u>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u> 사무를 관장한다.	② ----- <u>다음 각 호의</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신설>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256	16,25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250	16,250	
일반직 계	16,250	16,250	
·	·	·	
공업서기보	<u>59</u>	<u>64</u>	+5
·	·	·	
시설서기보	<u>3</u>	<u>4</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전기운영서기보	<u>11</u>	<u>10</u>	△1
기계운영서기보	<u>34</u>	<u>30</u>	△4
·	·	·	
·	·	·	